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9. 16 선고 2021가단3511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은태, 김재인, 정우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하정미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9. 16.

주 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대하여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20. 12. 23.경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 15. 접수 제35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2. 채권목록표 기재 채권양도금융기관(이하 ‘이 사건 각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2001. 8. 8.부터 2001. 8. 27.까지 사이에 같은 표 기재와 같이 C에게 금원을 대출하거나 C과 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위 각 대출계약 및 카드이용계약에 따른 대출금 및 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위 각 금융기관에 대하여 같은 표와 같이 미상환원금 및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금융기관은 2003. 10. 24. D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하였다. 위 각 채권양도사실은 그 무렵 C에게 통지되었다.

다. 이 사건 각 채권은 7,731,24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7. 6. 5.까지는 연 17%,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이 남아 있다.

라. 망 E은 2020. 12. 22.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들로는 처인 망 F와 자녀들인 피고, C, G, H이 있었다. 망 E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다. 망 F는 2020. 12. 23.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들로는 자녀들인 피고, C, G, H이 있었다.

마. 피고는 2020. 12. 23.경 C, G, H과 사이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2021. 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망 E, 망 F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각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C의 상속분인 1/4 지분에 관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만 망 E으로 하였을 뿐 실제 관리는 피고가 하였다. 피고가 대출금의 이자, 원금

상환, 세금납부,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비용 등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망 E에게 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나) 관련 법리

(1)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36372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등 참조).

(2)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 내용 · 목적 · 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에, 이와 같은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이 명의신탁자를 매매당사자로 이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하며(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909 판결, 1997. 5. 16. 선고 95다29116 판결 참조), 설령 상대방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계약명의자인 타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7.자 2013스133 결정,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참조).

(3)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다) 판단

(1)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E이 1996. 7. 12.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2.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 망 E은 2015. 9. 18. 주식회사 I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70,8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망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리고 설령 피고가 망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전히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즉,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 망 E이 아닌 피고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와 망 E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명의수탁자인 망 E이 매매당사자가 되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이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초한 등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와 망 E 사이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매도인이 망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피고와 망 E 사이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대하여도 피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 망 E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여전히 망 E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따라서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망 E 및 망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권리를 잠정적으로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은 C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 되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법정 상속분인 1/4 지분(= 2/11 지분 + 3/44 지분2))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친지원 2021. 1. 15. 접수 제35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성우

1. 부동산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부천시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36.9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부천시 대 462.9㎡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462.9분의 29.312

2. 채권 목록표

채권양도금융기관	☐ 은행	☐ 카드	☐ 카드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		
최초대출일	2001-08-08	2001-10-10	2001-08-27
연체개시일	2002-02-27	2002-02-16	2002-02-28
미상환원금	금1,263,332원	금2,753,243원	금3,714,670원
압도일 이후 지연손해금(연17%)	금3,756,353원	금8,186,409원	금11,045,087원
미상환채권합계금	금5,019,685원	금10,939,652원	금14,759,757원

1) 원고는 2021. 8.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란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을 '2020. 12.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같은 주장서면의 청구원인란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의 목적물을 'C의 아버지인 망 E이 2020. 12. 22. 사망하고, 어머니인 망 F가 2020. 12. 23. 사망하게 됨으로써 C이 망 E과 망 F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이라고 특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피고와 C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은 망 F의 사망 이후인 2020. 12. 23.경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의 일시를 '2020. 12. 23.경'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2) 망 E이 2020. 12. 22. 사망하여 그 4명의 자녀 중 한 사람인 C이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을, 처인 망 F가 이 사건 부동산 중 3/11 지분을 각각 상속하였고, 망 F가 2020. 12. 23. 사망하여 그 4명의 자녀 중 한 사람인 C이 이 사건 부동산 중 3/44 지분(= 3/11 지분 $\times$ 1/4)을 상속하였다.